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기웅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369

발의연월일: 2024. 7. 30.

발 의 자:김기웅·권영세·임종득

우재준 • 이인선 • 강선영

주호영 • 한기호 • 유용원

유영하 • 최은석 • 김민전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북한인권 실태 조사, 북한인권증진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한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고, 재단의 임원으로 12명 이내 의 이사를 두되 통일부장관이 2명, 국회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분의 1씩 동수로 추천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일부 교섭단체가 이사 후보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국회 추 천 절차가 계속 지연되어 재단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상황임.

이에 국회의 추천 절차 지연으로 재단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한 경우 통일부장관이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재단의 조속한 운영을 가능케 하고자 함.

단, 임시이사의 임기는 국회가 추천한 이사가 임명된 날의 전날까지로 하되 임시이사가 선임된 날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(안 제12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

북한인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2조의2(임시이사 임명 특례) ① 통일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사를 추천하지 아니하여 재단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한 경우 국회가 이사를 추천할 때까지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임명할 수 있다.
 - ② 임시이사의 임기는 국회가 추천한 이사가 임명된 날의 전날까지로 하되 임시이사가 선임된 날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.
 - ③ 그 밖에 임시이사 임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 <신 설></u>	제12조의2(임시이사 임명 특례)
	① 통일부장관은 제12조제1항
	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사를
	추천하지 아니하여 재단 운영
	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한 경우
	국회가 이사를 추천할 때까지
	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임명할
	<u>수 있다.</u>
	② 임시이사의 임기는 국회가
	추천한 이사가 임명된 날의 전
	날까지로 하되 임시이사가 선
	임된 날부터 3년을 초과할 수
	없다.
	③ 그 밖에 임시이사 임명 등
	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
	<u>로 정한다.</u>